



사회복지관련 정보제공

한양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사 : 생명순

목 차

-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· 긴급복지제도
- 2 산정특례 및 의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제도
- 3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일시적 지원사업
- 4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의료비 지원사업
- 5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절차 및 상담사례

사회복지지원체계

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
□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함.

□ 급여 신청 : 거주지 읍.면 주민센터에 본인 및 친족, 기타 관계인 신청.

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및 경제적 후원 소득 기준

(단위 : 원)

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	해당 제도 및 후원처
2015년 최저생계비	617,281	1,051,048	1,359,688	1,668,329	1,976,970	2,285,610	2,594,251	
120% 기준	740,737	1,261,258	1,631,626	2,001,995	2,372,364	2,742,732	3,113,101	차상위계층, 최저생계비 1.2배 ↓
130% 기준	802,465	1,366,362	1,767,594	2,168,828	2,570,061	2,971,293	3,372,526	
150% 기준	1,111,106	1,891,886	2,447,438	3,002,992	3,558,546	4,114,098	4,669,652	
160% 기준	987,650	1,681,677	2,175,501	2,669,326	3,163,152	3,656,976	4,150,802	Save the Children
170% 기준	1,049,378	1,786,782	2,311,470	2,836,159	3,360,849	3,885,537	4,410,227	
185% 기준	1,141,970	1,944,439	2,515,423	3,086,409	3,657,395	4,228,379	4,799,364	시군구청 긴급지원
200% 기준	1,234,562	2,102,096	2,719,376	3,336,658	3,953,940	4,571,220	5,188,502	공동모금회, 인터알리아
250% 기준	1,543,203	2,627,620	3,399,220	4,170,823	4,942,425	5,714,025	6,485,628	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
300% 기준	1,851,843	3,153,144	4,079,064	5,004,987	5,930,910	6,856,830	7,782,753	
400% 기준	2,469,124	4,204,192	5,438,752	6,673,316	7,907,880	9,142,440	10,377,004	

※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: 1인 증가시마다 301,702원씩 증가 (8인가구: 2,837,627원)

복지급여 사업별 선정기준

구 분	복 지 급 여
최저생계비 기준	- 국민기초생활보장 - 서울형기초보장
차상위 기준(120%)	- 장애(아동)수당, 차상위자활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(의료비), 우선돌봄차상위
차차상위 기준	- 최저생계비 130%: 한부모가족, 장애인자녀교육비 초중고생 교육비지원 - 최저생계비 150%: 주택바우처(임대료) - 최저생계비 185%: 긴급지원
기초연금 장애인연금	- 단독가구: 93만 원 - 부부가구: 148.8만 원

○ 복지업무 처리 절차



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

- **긴급지원 대상자** :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
- **신청절차** : 시.군.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(국번없이 129)
- **지원종류** : 생계지원, 주거지원(가구 구성원 별 차등), **의료지원(최대300만원)** 등
- **지원기간** : 1개월간 (신청일 기준으로 한달 소급 적용 가능함)
- **지원예외항목** :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, 증명발급비용, 식대비용(수급자) 등
(가족구성원 전체의 저축금액, 보험불입금,증권등 잔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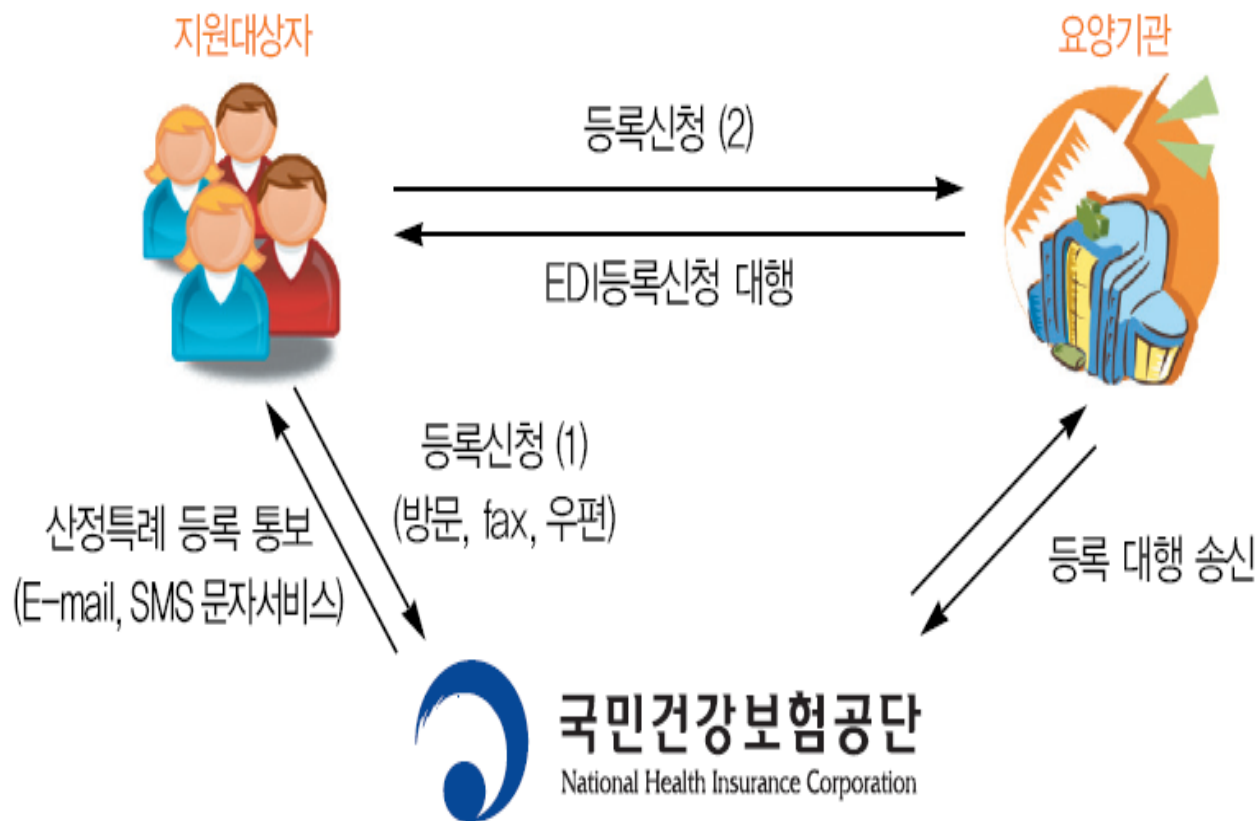
■ 긴급지원 기준

구 분	대 도시	중 소 도시	농 어 촌
재 산	13,500만원 ↓	8,500만원 ↓	7,250만원 ↓
금융재산	500만원 ↓		
소득기준	최저생계비 185% 이하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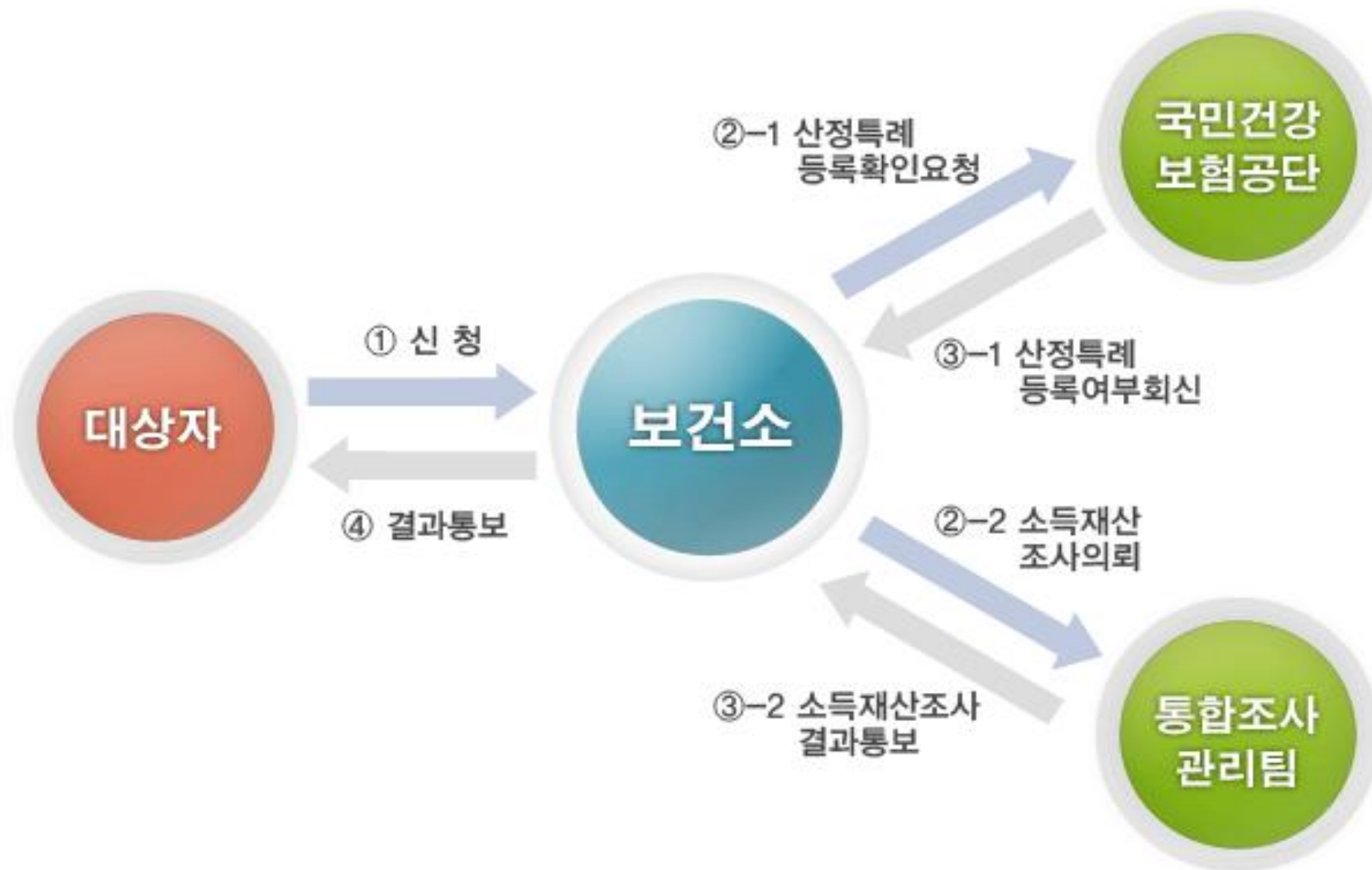
							(단위 : 원)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2015년 최저생계비	617,281	1,051,048	1,359,688	1,668,329	1,976,970	2,285,610	2,594,251
185% 기준	1,141,970	1,944,439	2,515,423	3,086,409	3,657,395	4,228,379	4,799,364

산정특례 등록대상자 및 절차

산정특례 등록 절차도



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절차



산정특례 & H등록환자 본인부담비율

항목	급여	비급여	선택진료
진찰료	66,030	0	0
입원료	485,250	0	0
식대	0	0	0
투약료	5,952	0	0
주사료	432,401	11,601	0
마취료	0	0	0
물리치료	0	0	0
정신요법	0	0	0
처치료	120,194	0	0
인공신장료	0	0	0
수술료	1,736,048	0	0
수혈료	154,830	0	0
기브스	0	0	0
임상병리	1,265,910	292,557	3,240
조직병리	0	0	0
검사료	261,477	0	0
핵의학	0	0	0
방사선	1,600,674	0	6,076
치료방사선	0	0	0
초음파	0	455,000	0
C T	0	0	0
M R I	0	0	0
보철/교정	0	0	0
재료대	150,054	198,800	0
제증명	0	0	0
기타, 종검, DRG	0	0	0
계	6,278,820	957,958	9,316



희귀·난치성의료비 & 산정특례 비교

구분	의귀·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	의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	비고
등록대상	저소득(차상위) 및 기초생활대상자	경제적 기준에 관계없이 확진 받은 자	
등록장소	관할 보건소	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행 가능한 병원	
지원항목	본인부담금 오염기대여비 간병비	본인부담금	확진 받은 환자 단, 오염기대여비는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본인부담금비율 (급여부분)	0%	10%	

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

간병비

- 월 30만원 지급
-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함

의료비

-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- 만성신부전 요양비 포함

보장구 구입비

-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
- 근육병 등 8종 질환자에 한함

희귀난치성
질환자
의료비지원사업

“134종”

호흡보조기 대여료

- 호흡보조기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(기계대여료 월60만원 이내, 기본소모품 월10만원 이내,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일 연 40만원 이내)
- 근육병 등 10종 질환자에 한함

특수식이 구입비

- 특수조제분유 (월30만원 이내)
- 저단백 헛반 (월14만원 이내)
-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7개 질환자에 한함

기침유발기 대여료

-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(월18만원 이내)
- 근육병 등 10종 질환자에 한함

※ 희귀난치성질환 관련사이트
: <http://helpline.nih.go.kr>
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.

※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
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지원대상 질환

암, 심장, 뇌혈관(비수술 포함), 희귀난치성질환, 중증화상 으로 수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※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, 항암치료 (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, 색전술)는 외래진료도 기준 충족시 지원한다.
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의료비 지원 범위

법정 본인부담금,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 등
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한다. [특실은 제외]

※ 본인부담금 = 법정 본인부담금 + 선택진료비·병실
차액 + 기타 비급여
[단, 예방, 성형, 미용, 임의 비급여 등 제외]
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선정기준

유형별 지원대상 의료비 규모

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시
저소득 가구 [최저생계비 200% 이하]	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
의료비 과부담 가구 [최저생계비 200%~300%]	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대비 30% 이상 [예를 들면 4인 가구시 의료비 1,200만원 이상 발생 시 가능]

※ 소득기준 초과가구 지원요청서(공단제공)

(최저생계비 200%초과 ~300%이하 작성서식)1부
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수준

☞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구간별 차등 지원

본인부담액	200~500만원	500~1000만원	1000만원~
지원 비율	50%	60%	70%

※ 지원액 :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합계 금액

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& 구비서류

👉 기간 : 2015. 01. 01 ~ 12. 31 [예산 소진 시까지]

👉 신청방법

환자[보호자 또는 대리인]가 **직접**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
※ 입원 시부터 퇴원 후 **60일** 이내만 신청

👉 구비서류

신청서,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 포함
통합서식,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등

👉 문의 : 보건복지부 콜센터 [129]

국민건강보험공단 <http://www.nhis.or.kr>

고객센터[1577-1000]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

사회복지공동모금회 080-890-1212 www.chest.or.kr

민·관 기관 의료비지원 연계



복지사업

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.



어린이집 건립
및 보육사업



희귀·난치성
질환자 지원사업



자살예방
지원사업



저소득치매노인
지원사업



저출산해소 및
미숙아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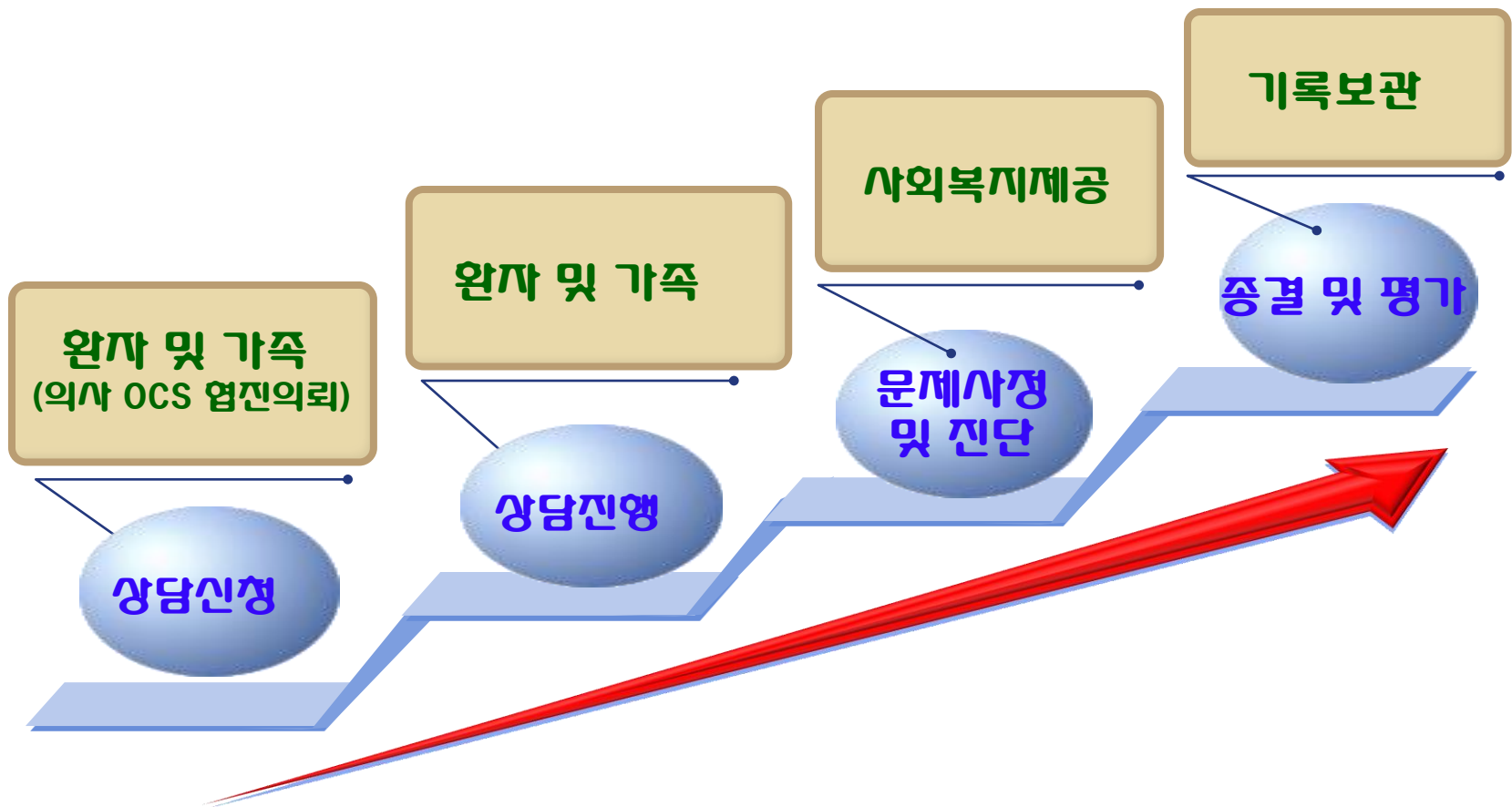
사회적익인
지원사업



건강증진
지원사업



사회복지팀 상담의뢰 절차



감사합니다!!

